

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세액 환급·공제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환급일	처리기간 15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	주민(법인)등록번호
	상호(법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
	사업장 소재지		전화번호
	환급 예금계좌	금융기관명	계좌번호

경유 공급월	년 월(. ~ .)
--------	--------------

환급·공제 신청내용

(단위 : 원)

구 분	공급량(L)	환급·공제세액				
		교통·에너지·환경세	개별소비세	교육세	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	합 계
경 유						

신청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1조의5제2항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2의7제1항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 감면세액 환급·공제신청서를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,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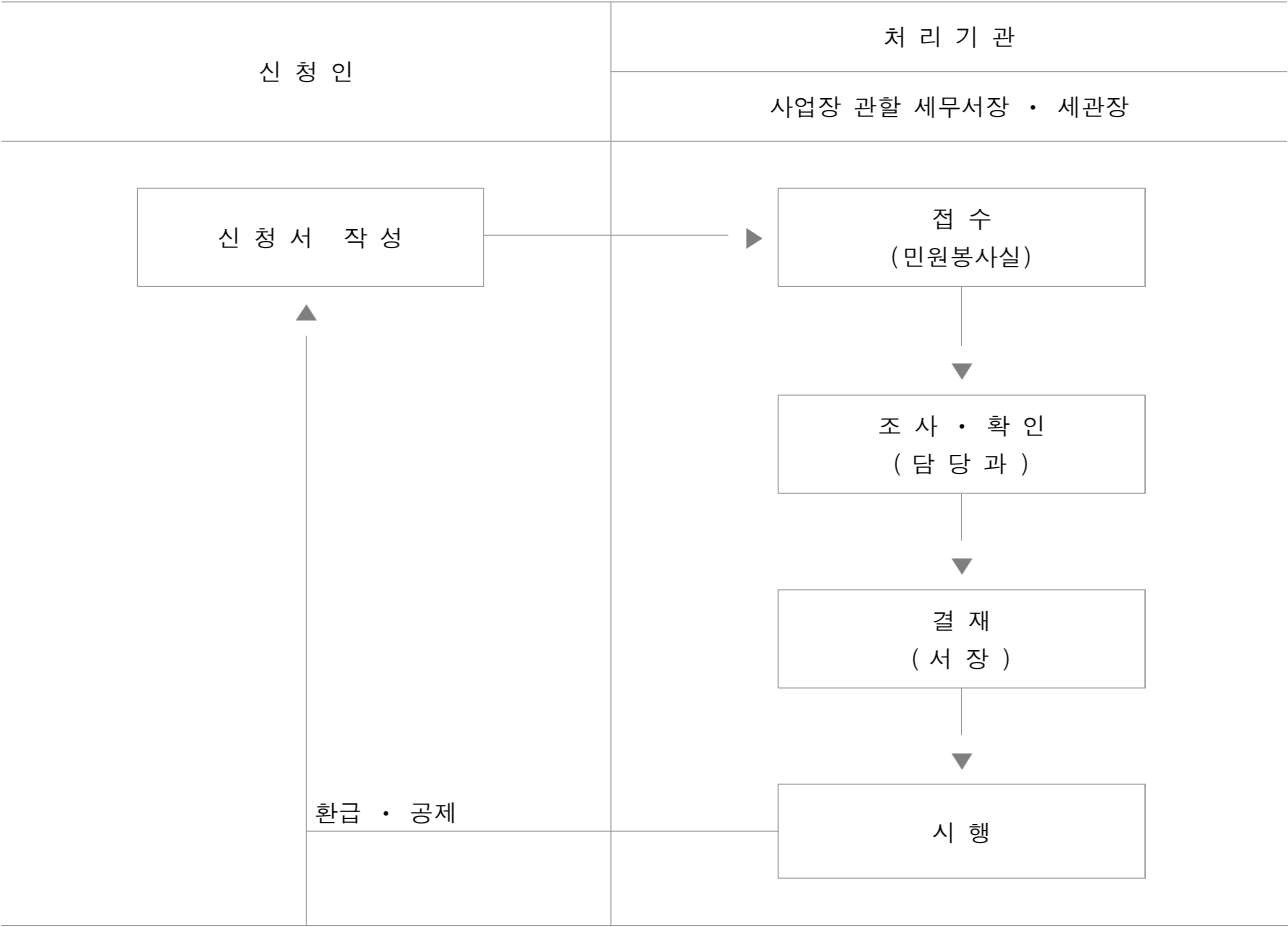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연안화물선 경유 공급명세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1.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한 석유제품(경유) 수량 및 환급·공제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.
- 2. 환급 예금계좌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된 계좌로 세무서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 부터 감면세액을 환급·공제받으려는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.
- 3. 법령개정 등으로 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급신청내용을 세율 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명세서

1. 제출자 인적사항

① 사업자등록번호		② 상호(법인명)	
③ 성명(대표자)		④ 사업장 소재지	
⑤ 경유 공급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

2. 연안화물선 경유 환급·공제내역 합계(세액란은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기

재) (단위 : L, 원)

⑦ 경 유		비 고
수 량	세 액	

3. 연안화물선용 경유 환급·공제명세

(단위 : L, 원)

일련 번호	공급월일	법인명	경유		비고
			수량	세액	
합계					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13					
14					
15					